

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제 안 설 명

발의자 : 문영민 의원(더불어민주당, 양천구 제2선거구)

(의안번호 : 제3255호)

22. 06. 15.

서울특별시의회  
교육위원회

안녕하십니까.

서울의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최기찬 위원장님  
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.

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문영민 의원입니다.

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감염병 사태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디지털기기 등을 사용한 원격수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2월(제298회 정례회, 의안번호 : 1948)에 제정된 조례입니다.

동 조례에서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방안이 제10조(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)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범위가 ‘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’으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, 제2조(정의)에서도 용어의 뜻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함에 있어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

이에 동 조례 제2조(정의)에 관련 법령 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‘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’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여 효율적·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드린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